

#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9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13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김동식, 박기재, 정진철,  
김기대, 김제리, 봉양순, 임만균,  
정재용, 임종국, 양민규, 이정인,  
유정희, 박기열, 오현정, 전병주,  
이상훈, 김화숙, 황인구, 장상기,  
오중석, 최 선, 채인묵, 장인홍,  
이태성, 추승우, 이동현, 전석기,  
노식래, 노승재, 김경영, 김희걸,  
권순선, 문병훈, 김수규, 김광수,  
유 용, 송도호, 최영주, 문장길,  
최정순, 홍성룡, 김경우 의원(43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‘자매결연’을 ‘상호결연’으로 함(안 제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중 “자매결연”을 “상호결연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2제1항 중 “자매결연”을 “상호결연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